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458 호 2024. 6. 13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-130호[하천점용 허가 고시]..... 1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868호[공고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875호[공시송달공고].....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878호[공시송달공고]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882호[공고]..... 5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 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- 130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1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 명	우대화		
주 소	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로 27, 107동 303호		
점 용 위 치	○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-118번지	하 천 명 칭	○ 매곡천
점 용 내 용	○ 공연	점 용 면 적	○ 33m ²
점 용 기 간	2024. 7. 6.(토) 16:00 ~ 19:00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- 868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명	박민*		
주소	울산광역시 남구 대*원로9*번길 **		
점용 위치	○ 산하동 1031-18번지 일원 (산하동 1082번지 도로)	노선명	○ 소1-86
점용 목적	○ 우수관로 매설	점용 면적	○ L = 5m ○ A(일시) = 9m ² ○ A(계속) = 1m ²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15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- 875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구역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- 공고내용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4. 6. 10. ~ 2024. 6. 24.(14일간)
- 공고장소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- 무단점유 현황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	1120-1번지	미상	미상	불법경작	20,000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**2024. 6. 24.(월)까지** **자진 원상복구**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「하천법」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- 878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구역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공고내용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4. 6. 10. ~ 2024. 6. 24.(14일간)
3. 공고장소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무단점유 현황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 재 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	7-54번지 7-99번지 7-76번지	미상	미상	불법경작	1,000	

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**2024. 6. 24.(월)까지** **자진 원상복구**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「하천법」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- 882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성명	주식회사 *동*시가스 대표이사 *재*		
주소	울산광역시 *구 *포* *60-*0		
점용 위치	○ 정자동 동해안로 1442 일원	노선명	○ 중1-90
점용 목적	○ 도시가스 매설	점용 면적	○ L = 9m ○ A(일시) = 16.20m ² ○ A(계속) = 0.54m ²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		